

「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책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 ~ 2조)
 - 가) 근거법규,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리
- 2) 평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3 ~ 13조)
 - 가)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

나)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·운영·직무 명시

다) 분과위원회 근거, 수당 등 명시

3)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특별법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(안 제14 ~ 16조)

가)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

나)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지원

다)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¹⁾됨에 따라
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,

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.

○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구정책과 별개로

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군의 주도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
조례안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됨.

1) 2022. 6. 10. 제정, 2023. 1. 1. 시행

○ 검토결과,

조문이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되었고, 내용 등의 모순이 없어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